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정	2021년	12월	06일
전부개정	2022년	8월	08일
개정	2023년	6월	09일
개정	2024년	2월	16일
개정	2025년	9월	29일

제1 장 총 칙

- 제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조직),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조직),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 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영도구○○○○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제2 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종목단체 관련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영도구를 대표한다.

- 제3 조(소재지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그 사무소를 영도구 관내에 둔다.
- ② 정회원종목단체 및 준회원종목단체는 가급적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목적 및 지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산하단체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 2023.06.09>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회원종목단체는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구 규모의 사업은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 ③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조 직

제 5 조(조직) ① 회원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이하 “영도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9>

<개정 2023.06.09.,개정 2025.09.29>

③ 회원종목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사업)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회원종목산하단체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준용한다.

제5조의2(연맹체) ① 제5조(조직)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영도구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영도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06.09>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7조(권리와 의무)제3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6.09.,2024.02.16.>

1. 제5조(조직)제1항에 따른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장 <개정 2023.06.09>
2. 제5조(조직)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연맹체의 장 <개정 2023.06.09>
3. <삭제 2025.09.29>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이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3.06.09.,2024.02.16.,개정 2025.09.29>

1. <삭제 2025.09.29>
2. <삭제 2025.09.29>
3. <삭제 2025.09.29>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2024.02.16.>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선수 육성팀(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2.16.,개정 2025.09.29>

1.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등록팀)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팀으로 초·중·고등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인정한 교기육성팀(단, 학교장이 교기육성 팀으로 인정한 경우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 대학부는 해당 대학 총장이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팀, 실업

팀은 기관장이 인정한 팀의 대표<신설 2025.09.29>

2. 체육동호인 조직은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등)의 대표<신설 2025.09.29>

⑤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구성할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전문선수 육성팀(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각 단체군별 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 정원, 대의원 선출방법 등을 정하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출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이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6.09.,2024.02.16.,개정 2025.09.29>

1. <삭제 2024.02.16.>

2. <삭제 2024.02.16.>

3. <삭제 2024.02.16.>

4. 전문체육선수 육성팀은 초·중·고등부는 교감, 대학부는 운동부 팀장(과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실업팀은 팀장(과장, 계장)이상<신설 2025.09.29.>

5. 체육동호인 조직은 부클럽장(총무담당) 이상<신설 2025.09.29.>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3.06.09.,2024.02.16.>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2024.02.16.>

1. <삭제 2024.02.16.>

2. <삭제 2024.02.16.>

3. <삭제 2024.02.16.>

4. <삭제 2024.02.16.>

5. <삭제 2024.02.16.>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06.09.,2024.02.16.>

⑨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06.09.,2024.02.16.>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4.02.16.>

2. 회원종목산하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신설 2024.02.16.>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2.16.>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2.16.>

5. 그 밖의 중요사항 <신설 2024.02.16.>

⑩ 체육회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제1항 각 호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 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2.16.>

제 8 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임원의 직무)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결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09.29>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

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00.00.>

⑤ 총회는 통지된 안전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전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전은 의결할 수 없다.

제 9 조(의장)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총회의 소집)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시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임원의 직무)제4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6.09.>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023.06.09.>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4항에 해당하는 종목단체는 10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개정2023.06.09., 2024.02.16.,개정 2025.09.29>>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5.09.29.]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5.09.29>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운영위원회는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5.09.29>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5.09.29>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09.29>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9>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09.29>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임원의 불신임)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09.29>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산하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와 회원종목산하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시회원종목단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종목산하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09.29>

④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산하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02.16.,개정 2025.09.29>>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10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02.16.>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⑤ <삭제 2024.02.16.>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 출신자가 없거나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 하며, 기존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9.29>

3. <삭제 2023.06.09.>

4. <삭제 2023.06.09.>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25.09.29>

<개정 2023.06.09., 2024.02.16.>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

계 관력학과 졸업자나 1년 이상의 회계업무직 수행자까지 가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⑨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선임 결과를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원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09.>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수팀 육성(학교부 및 실업팀 등)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대의원을 겸임 할 수 있고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구·군종목단체 임원은 해당 종목의 다른 구·군종목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3.06.09.>

[제목개정 2025.09.29.]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개정 2025.09.29>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2조(임원의선임)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06.09.,개정 2025.09.29>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임원의 임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5.09.29>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임원의 임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임원의 임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심의절차), 제20조(재심의요구)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3.06.09., 개정 2025.09.2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및 제48조(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5.09.29>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6.09.>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종목단체 및 구·군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 동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3.06.09.>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 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임원의 선임)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 회원종목산하단체,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9.29>

제 6 장 회원종목산하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회원종목산하단체의 회원으로 각 구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영도구관내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회원종목산하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클럽단위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회원종목산하단체의 총회) ①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2.16.>

1. 회원종목산하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동 종목단체의 장

<신설 2024.02.16.>

2. 회원종목산하단체 연맹체의 장 <신설 2024.02.16.>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2.16.>

④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신설 2024.02.16.>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실업팀) 등록팀 대표

<신설 2024.02.16.>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대표

<신설 2024.02.16.>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02.16.>

⑥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24.02.16.>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체육회는 제29조(회원종목산하단체의 총회)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

다.<개정 2025.09.29>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회원종목산하단체의 규정 등) ①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산하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6.09.>

② 감사 중 회계감사의 자격은 회원종목산하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6.09.>

제33조(회장인준 등) ① 회원종목산하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6.09.>

②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인준한 회원종목산하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6.09.>

④ 영도구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 위임을 받아 회원종목산하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9>

⑤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제22조(임원의 선임)제3항에 따라 임원의 구성요건을 준용하되,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회원종목단체

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제34조(규약 등 승인) ①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제32조(회원종목산하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산하단체의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종목단체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회원종목산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산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회원종목산하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산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09.29>

제36조(회원종목산하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종목산하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회원종목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

무)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영도구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5.09.29>

② <삭제 2025.0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종목산하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9>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및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09.29>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규약(정관)에 별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9.29>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법인에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관계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정한 친

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회원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가급적 복식부기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종목산하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09.29>

② 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

는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대한체육회 ‘감사규정’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지원은 해당 단체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의 이사로 한다.

⑥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체육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종목단체를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올림픽자산 등) 및 제55조(전국종합체육대회 등에 대한 권리)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종목명)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④ 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 ⑤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⑥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산하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사무장 등 직원(회원종목단체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06.09.>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 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에 한정한다)를 얻어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 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종목단체에 보고하고, 통보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 법인이 아닌 경우와 절차는 동일하나 최종적인 승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개정 2025.09.29>

③ 회원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9>

② 제1항에 따른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9.29>

1.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신설 2025.09.29.>
2. 예산 집행내역(예·결산서) <신설 2025.09.29.>
3.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신설 2025.09.29.>
4. 감사 보고서 <신설 2025.09.29.>
5. 외부기관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신설 2025.09.29.>
6. 임원 및 직원 현황<신설 2025.09.29.>
7. 규약(정관) 및 모든 규정<신설 2025.09.29.>
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징계 현황<신설 2025.09.29.>
9.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신설 2025.09.29.>
10. 과실금 집행내역<신설 2025.09.29.>
11.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신설 2025.09.29.>

부 칙(2021.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8.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6.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임원의 겸직제한)제4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는 회원종목단체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0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제47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종목단하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원종목산하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0조 관련)

기 본 재 산 목 록

종별 (용도별)	수량(㎡)	평가액	비고
계			

부 동 산 명 세

구분		주소	면적(㎡)	취득일
토지				
건물				